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환자정보 기재 의무화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법률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처방전의 기재) 제2항('19.10.31., 국회 본회의 의결)
3. 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가 조만간(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마약류 취급 각 유관단체에서는 안내문을 소속 회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 등에서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각 시도에서는 소속 시·군·구 유관 업무부서로 안내문을 전달하여 주시고, 각 시·군·구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사용(직접 투약 또는 조제)하는 관할 의료기관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기재사항 등 안내문.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 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 경기도지사(보건의료정책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 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주무관 주민진 사무관 김익상 마약관리과장 전결 2019. 11. 15.
최승진

협조자

시행 마약관리과-2379 (2019. 11. 15.)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 안전처 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99 팩스번호 043-719-2890 / redjoo79@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